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119구급대로 편성할 수 있는 사람에 기간제 근로자 추가>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59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13.
3. 회 부 일 : 2024.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19구급대원의 출산, 육아휴직 등 장기간 공백 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119구급대의 정의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19구급대원이 마음 편하게 출산과 육아를 하고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소방청장등이 119구급대로 편성할 수 있는 사람에 “소방공무원” 외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u>소방공무원으로</u>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5. ~ 12. (생략)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소방공무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u> -----. 5. ~ 12.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2조제4호는 “119구급대”를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급대의 구성인력을 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있음.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 휴직 현황을 살펴보면 육아,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2022년 914명, 2023년 1,011명, 2024년(7월 말 기준) 382명 등 꾸준히 휴직자가 존재하고,

소방청은 119구급대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¹⁾를 고용하여 이들이 119구급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19구급대에서 활동하는 기간제근로자²⁾는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선발하고, 소방공무원인 119구급대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고용기간은 6개월 ~ 1년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이 119 구급대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과 현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현재 119구급대에 편성된 기간제근로자의 자격요건, 선발절차는 [참고 1] 참조

<최근 3년간 119 구급대원 휴직 현황>

시도	2022년	2023년	2024년 (7월말 현재)	휴직사유
합계	914	1,011	382	
서울	103	65	39	육아휴직, 질병휴직
부산	32	54	34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대구	24	12	3	육아휴직, 질병휴직
인천	48	52	30	육아, 출산, 질병 등
광주	18	20	12	육아, 출산, 질병 등
대전	14	15	17	육아, 출산, 질병 등
울산	11	13	5	육아휴직, 질병휴직
세종	7	12	189	육아, 출산, 질병 등
경기	344	364	17	육아, 출산, 질병 등
강원	37	48	17	육아휴직, 질병휴직
충북	26	34	19	육아, 출산, 질병 등
충남	54	61	-	육아, 출산, 질병 등
전북	53	74	-	육아, 일반질병, 병역휴직, 가족돌봄 휴직
전남	33	54	-	육아휴직, 질병휴직
경북	26	43	-	육아휴직, 질병휴직
경남	67	63	-	육아, 질병
창원	5	8	-	육아, 질병
제주	12	19	-	출산, 육아, 병가

(자료: 소방청)

<2024년도 각 시도별 119구급대 편성 현황>

(2024. 7. 31. 현재)

시도	합계(%)	구급대원		기간제근로자	
		인원	%	인원	%
합계	15,605(100,.0)	13,623	97.3	382	2.7
서울	1,521(100,.0)	1,482	97.4	39	2.6
부산	809(100,.0)	675	95.2	34	4.8
대구	687(100,.0)	584	99.5	3	0.5
인천	806(100,.0)	676	95.8	30	4.2
광주	397(100,.0)	285	96.0	12	4.0
대전	419(100,.0)	302	94.7	17	5.3
울산	376(100,.0)	276	100.0	0	0.0
세종	209(100,.0)	104	95.4	5	4.6
경기	2,394(100,.0)	2,105	91.8	189	8.2
강원	1,144(100,.0)	1,044	100.0	0	0.0
충북	751(100,.0)	651	100.0	0	0.0
충남	1,112(100,.0)	995	98.3	17	1.7
전북	1,089(100,.0)	972	98.3	17	1.7
전남	822(100,.0)	703	97.4	19	2.6
경북	1,246(100,.0)	1,246	100.0	0	0.0
경남	1,093(100,.0)	993	100.0	0	0.0
창원	356(100,.0)	256	100.0	0	0.0
제주	374(100,.0)	274	100.0	0	0.0

(자료: 소방청)

<2024년 구급업무 관련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2024. 7. 31. 현재)

구 분	채용인원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평균 근무기간(계약기간)
계	382	347	35	
서 울	39	33	6	6개월
부 산	34	32	2	6개월
대 구	3	2	1	4개월
인 천	30	29	1	6개월
광 주	12	11	1	6.3개월
대 전	17	16	1	9월 이내
세 종	5	5	-	1년
경 기	189	185	4	1년
충 남	17	16	1	10개월
전 북	17	10	7	11개월(24. 2. 5. ~ 12. 31.)
전 남	19	8	11	1년

(자료: 소방청)

대부분의 시·도에서 소방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의 부족이 상시화 되고 있는 점³⁾, 고령화 사회 극복 대책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 구급업무는 국민의

3)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소방공무원 정원은 6만 7,039명, 현원은 6만 6,797명임.

(출처: 소방청, 2024년 소방청 주요 업무계획, 2024. 6. 19., 3면)

안전과 안녕을 위해 상시 그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 구급차에는 구급대원 3인 탑승이 원칙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구급대원 2인만 탑승하여 구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시·도별로 구급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서비스에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⁴⁾ 등을 감안할 때 구급업무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일정기간 기간제근로자를 구급대에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바,

개정안은 기간제근로자를 구급대에 편성 가능한 인력으로 명시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은 “119구급대”의 정의규정을 “소방공무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편성된 단위조직”으로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구급대에 반드시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하는 인력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특히, 재정이 열악한 시·도의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소방공무원을 충원하는 대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구급대원 인력으로 운용하는 부작용도 우려됨.

따라서, “119구급대”의 정의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휴직·파

4) 2023년도 구급차 운행 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119구급대원 3인이 탑승한 경우가 68.9%로 나타남.(상세 현황은 [참고 2] 참조).

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결원 보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구급대에 편성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구급대 관련 기간제근로자 관리 현황을 보면 각 시·도마다 보수, 계약기간 및 관리부서 등을 상이하게 운용하고 있으므로⁵⁾, 기간제근로자 운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용요건, 복무기준 등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⁶⁾,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등은 본인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그 기본 원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개정안의 취지가 119구급대에 한정해서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119구급대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거 및 채용 요건 등에 관한 특례를 이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기간제교원의 채용,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 법은 기간제교원의 임용요건,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해 규정

5)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3] 참조

6) 복지 및 보건 관련 내용은 시도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근무기간 등에 따라 다름

1) 복지포인트는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가능 등

2) 연 2회 건강검진, A형 및 B형 간염, 수두, 파상풍 등 예방접종

3) 6개월 이상 계약 시 명절휴가비 50만원 지급

하고 있음⁷⁾.

문 의 처
02)6788-5351

7) 기간제 교원과 관련한 「교육공무원법」 관련규정은 [참고 4] 참조

참고 1

119구급대에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경기도)

○ 관련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경기도 공무원직원 등 운영 규정(훈령 제1569호)(예시)

○ 응시자격 :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자격 소지자

○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2차)면접전형 ⇨ 공개채용

- (공통사항) 경기도 「기간제 스마트채용 접수 시스템」 사용
- (공고게시) 채용접수 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공고문 게시

(7일 이상)

- (서류전형) 채용시스템을 통한 채용서류 접수 및 자격사항 확인
- (채용면접) 블라인드 면접으로 공정성 확보 및 2인 이상 위원 구성

※ 외부위원 1/2이상

- (근로계약) 최종 합격자 「배치전 건강검진」 실시 후 근로계약서, 서약서 등 작성

※ 배치전 건강검진 비용(약 4만원) 개인카드 사용 후 급여 작업 시
검사비용 제출

참고 2

구급대차 3인 탑승 현황

(자료: 소방청, 2023. 12. 31. 기준)

구분	소방력 기준에 따른 3인 탑승 구급대 현황						
	소계 (차량)	소계 (인원)	3인 탑승 (차량)	3인 탑승 (인원)	2인 탑승 (차량)	2인 탑승 (인원)	3인 탑승률(%)
계	1,332	11,935	1,233	11,310	99	625	90.52
서울	147	1,386	147	1,386	-	-	100.0
부산	72	648	72	648	-	-	100.0
대구	59	531	59	531	-	-	100.0
인천	63	562	60	544	3	18	95.2
광주	32	288	32	288	-	-	100.0
대전	32	279	28	252	4	27	87.5
울산	29	252	26	234	3	18	89.7
세종	12	107	11	105	1	2	91.7
경기	257	2,201	177	1,689	80	512	68.9
강원	86	809	82	785	4	24	95.3
충북	51	459	51	459	-	-	100.0
충남	85	765	85	765	-	-	100.0
전북	69	621	69	621	-	-	100.0
전남	71	639	71	639	-	-	100.0
경북	116	1,041	116	1,041	-	-	100
경남	97	867	95	855	2	12	97.9
제주	26	228	24	216	2	12	92.3
창원	28	252	28	252	-	-	100.0

참고 3

2024년도 구급 관련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자료: 소방청, 2024.7.31. 기준)

구 분	채용인원	보수지급기준	계약기간	관리부서
계	382	1급 347명 / 간호사 35명		
서울	39	서울형 생활임금 단가 적용 (11,436원/시간당)	9개월	본부 소방행정과
부산	34	부산시 생활임금기준 (11,074원/시간당)	약 7개월	본부 구조구급과 (구급계)
대구	3	기능 인부 기본급(1,863,610원) (기타수당 별도) (대구광역시 기간제 근로자 2024년도 임금업무 처리지침)	3 ~ 6개월	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서 대응구조과
인천	30	최저임금 단가 적용 (11,400원/시간당)	6개월	본부 구조구급과
광주	12	기능 인부 기본급(2,253,020원) (기타수당 별도)	6 ~ 13개월	소방서
대전	17	2,257,200원(생활임금 적용) 근무형태(일근, 교대)에 따라 금액변동	9개월	본부 구조구급과
세종	5	생활임금기준(11,416/시간) (기타수당 별도)	12개월(최초) 12개월(재계약)	소방서 소방행정과
경기	189	경기도생활임금 기준 시간당 11,485원 건강검진비 400,000원 복지포인트 300,000원 피복비 지원 650,000원 명절휴가비 500,000원(2회) 유급휴가 1일 95,120원 공정수당(근무기간별 차등지급)	12개월	본부 인사담당관
충남	17	기본급 2,060,740원 교통비 50,000원 급식비 14,000원 상여수당 70,000원 생활임금보존수당 82,760원 명절휴가비 400,000원 기타 연장, 야간근로 수당 지급	10개월	소방서 소방행정과
전북	17	2,060,740원(기본급) 야간, 연장수당 별도	6개월	본부 소방행정과
전남	19	2023년도 전라남도 생활임금 (11,445원/시간당)	6개월~12개월	소방서 소방행정과

참고 4

「교육공무원법」 상 기간제 교원 관련 규정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⁸⁾,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⁹⁾,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8.12.18.>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

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1.5.19., 2015.3.27., 2021.3.23., 2022.10.18.>

1. 삭제<2012.1.26.>

2. 금품 수수(授受)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3.14.]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1.3.23., 2022.10.1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8)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제2항·제3항, 제43조의2(당연퇴직), 제44조(휴직), 제45조(휴직기간 등), 제46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제47조(정년), 제49조(고충처리),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9)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70조(직권면직), 제73조(휴직의 효력), 제73조의2(특

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제73조의3(직위해제), 제73조의4(강임),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발령), 제78조(징계사유),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79조(징계의 종류), 제80조(징계의 효력), 제82조(징계 등 절차),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제1항·제2항, 제8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